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9 선고 2014가합523102(본소), 2014가합26762(반소) 판결
[청구이의 · 이득상환금등]

전 문

원고(반소피고)A

피고(반소원고)B

변론 종결 2014. 12. 12.

판결 선고 2015. 1. 9.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에 대한 공증인가 대한합동법률사무소 2004년 증서 제306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이를 불허한다.
2.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5. 31.부터 2015. 1. 9.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은 피고(반소원고)가, 반소에 관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N

청 구 취 지

본소 : 주문과 같다.

반소 :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에게 131,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31.부터 이 사건 반소장 부분 송달일까지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3. 2. 피고와 사이에 원고의 부친인 C의 피고에 대한 채무 1억 3,150만 원을 지불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고, 2004. 3. 30. 위 약정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와 사이에 수취인 피고, 액면금 1억 3,150만 원, 지급기일 2004. 5. 30.로 하는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위 약속어음을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하고, 위 공정증서를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4. 2. 14.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 4887호로 원고의 예금채권 등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2. 28. 위 법원으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 중 1억 원 부분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이 사건 약속어음의 지급기일이 2004. 5. 30.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은 위 지급기일로부터 어음법이 정한 3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지난 2007. 5. 29.이 경과함으로써 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하였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소멸시효 중단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완성 전인 2005. 8. 5.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위 결정이 2005. 8. 11.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을 제5,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원고의 주식회사 삼원이엔에스에 대한 1억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타채11328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05. 8. 5. 위 법원으로부터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은 2005. 8. 11.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삼원이엔에스에 송달된 사실은 인정된다.

다) 그러나 한편, 을 제6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의 제3채무자인 주식회사 삼원이엔에스는 2004. 9. 30. 원고와 사이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이미 소멸한 채권에 대한 것으로 시효 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득상환청구권에 관한 주장 가)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하여, 여전히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의 집행채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아래에서 볼 바와 같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의 시효 소멸 이후 피고에게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약속어음의 소지인인 피고는 발행인인 원고에 대하여 어음법 제79조 소정의 이득상환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시효소멸로 인한 이득상환금 1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일 다음날인

2004. 3. 31.부터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선택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약속어음 발행일 다음날인 2004. 3. 31.부터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 원인관계상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어음이 발행되거나 배서된 경우에는 어음채권이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하여도 발행인 또는 배서인에 대하여 이득상환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이치는 그 원인관계상의 채권 또한 시효 등의 원인으로 소멸되고 그 시기가 어음채무의 소멸 시기 이전이든지 이후이든지 관계없이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00. 5. 26. 선고 2000다10376 판결 참조).

피고는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 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약정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이 사건 약속어음을 발행한 이상,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어음법상 이득상환청구권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위 청구는 이유 없다.

2) 이 사건 약정금 청구 원고가 2004. 3. 2. 피고에게 1억 3,15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이 사건 약정서를 작성한 사실, 이후 이 사건 약정금을 담보하기 위해 지급기일을 2004. 5. 30.로 하는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를 2004. 5. 30.로 약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금 1억 3,15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변제기 다음날인 2004. 5. 31.부터 원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5. 1. 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이 사건 약정금에 대해서도 2004. 3. 31.부터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나, 원·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약정금의 변제기를 2004. 5. 30.로 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약정금에 어음법이나 상법이 정한 연 6%의 지연손해금률이 적용됨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인정범위를 초과한 부분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다.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시효완성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금 채무의 실질은 원고의 부친 C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보증채무에 해당하고, C의 횡령일인 2004. 1. 6.부터 5년의 상사소멸시효기간 또는 3년의 민법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보증인인 원고에 대한 시효중단 여부에 관계 없이, 이 사건 약속어음금 채무 역시 부종성에 따라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C은 피고로부터 그 소유의 시가 1억 6,400만 원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교부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전당포에서 1억 2,500만 원을 차용하면서 담보로 맡겨 횡령한 사실, 원고는 C의 횡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를 지불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되나, 앞서 본 각 증거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이 사건 약정서 문언상 '보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고, 무조건적인 지불을 약정한 점, ② 신원보증약정 등의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사전적 보증 이외에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하여 사후에 보증약정을 체결하는 것은 통상적인 경우로 볼 수 없고, 오히려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병존적 채무인수나 별도의 금전지급 약정으로 보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 이 사건 약정금 채무가 손해배상채무의 보증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불공정행위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부친의 구속을 막기 위해 궁박, 경솔, 무경험에 의해 이루어진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이므로, 민법 제104조에 의하여 무효라고 주장하나, 갑 제5 내지 10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원고가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의 상태에 있었다거나 객관적으로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김성수

판사김유진

판사하승우